

제305회 정례회

2011. 12. 19(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· 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시찬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1월 09일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2월 일

3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이 2011. 6. 30부터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적립·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재난관리기금 운용기준 확대

-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액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
⇒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 (안 제3조)

나.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 신설 (안 제4조, 별표1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고,
-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설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의 개정·시행에 따라 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,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- 조문의 내용은 「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간결하게 제출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